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10
----------	------

2020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5일, 김 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9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경 의원)

1. 제안이유

-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소규모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5일 김 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10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
니다.
- 동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른 통폐합학교 및 소규모학
교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
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은 출생률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교육부 학교정책관-7112, 2015.12.31)’을 마련하여 지역별 실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의 범위 기준을 제시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 균형 배치를 목표로 2023년까지 통·폐합 10개교와 이전재배치 4개교, 통합운영학교 4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¹⁾.
- 또한 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금 및 통학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폐지학교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추진과 폐교·이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지원 및 통합운영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에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 및 관리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바,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구체적 지원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적정규모학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 등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15p. 서울시교육청, 2018.10.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의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위원회는 현재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구성·운영되어 왔는바,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일자	내 용
2019. 3. 1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심사(염강초 외 7건)
2019. 7. 2.	2019년 제2차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지원 계획(안) 심사
2020. 2. 12.	2020학년도 제1차 적정규모육성 추진 학교 지원계획(안) 심사 등 3건

3)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6조의 제명을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조문 순서를 바꾸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995,2020.5.29.).
- 그러나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통폐합, 이전재배치 및 통합운영학교 등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적정규모학교 운영시 학교의 규모와 통학거리 등의 교육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육성’보다는 ‘운영’으로 규정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문 순서의 변경은 별도의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자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